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비스 오용 관련 사항 약관 명시 및 보고서 작성·제출의무〉

■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71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서비스 오용 관련 사항 약관 명시 및 보고서 작성 · 제출의무(안 제 44조의11 신설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상회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9. 23.

다. 회 부 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일명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채널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거나, 공갈·협박 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최근 일부 유튜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유명 크리에이터 ‘쯔양’을 협박하고, 부정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기존 제44조의2제5항 규정을 삭제하고, 제44조의11제1항으로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1항 등).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44조 제1항의 권리침해정보 및 제44조의7의 불법정보를 게재하는 등 서비스 오용 판단 기준, 사전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오용한 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중지·수익중지·해지 등 제재기준, 이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절차, 다수의 신고 이력을 가진 오용자에 대한 사전 경고조치 및 사유 제공, 오용자의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내부 분쟁조정 절차 등을 약관 내용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2항).
- 다. 약관상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연 1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3항).
- 라. 제44조의11제2항의 약관 명시 의무 및 제44조의11제3항의 보고서 작성·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함(안 제77조).

Ⅲ. 검토의견

1. 서비스 오용 관련 사항 약관 명시 및 보고서 작성·제출의무 (안 제44조의11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약관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44조의11 제2항).
 - 서비스 오용(제44조 제1항의 권리침해정보·제44조의7의 불법정보 게재 등)에 대한 판단기준(제1호)
 -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제도 및 신고된 정보에 대한 처리 절차(제2호)
 - 다수의 신고 이력을 가진 오용자에 대한 사전 경고조치 및 사유 제공(제3호)
 - 사전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오용한 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중지·수익중지·해지 등 제재기준(제4호)
 - 제재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내부 분쟁조정 절차(제5호)
-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약관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하여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 1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44조의11 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약관 명시 의무 또는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해당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제공자의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음(안 제77조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④ (생 략) ⑤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u> <u>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u> <u>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u> <u>로 밝혀야 한다.</u> ⑥ (생 략) <u><신 설></u>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약관 명시 의무 및 보 고서 작성·제출 의무) ①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 2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u> <u>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u> <u>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u>

현행	개정안
	<u>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약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제44조제1항의 권리침해정보 및 제44조의7의 불법정보를 게재하는 등 서비스 오용에 대한 판단기준</u> <u>2. 제1호 오용에 대한 신고제도 및 신고된 정보에 대한 공정·투명·신속 처리 절차</u> <u>3. 다수의 신고 이력을 가진 오용자에 대한 사전 경고조치 및 사유 제공</u> <u>4. 사전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오용한 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중지·수익중지·해지 등 제재기준</u> <u>5. 제4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내부 분쟁조정 절차</u> <u>③ 제2항의 약관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 1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작성된 보고</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u>제77조(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1. 제44조의11제2항의 약관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u> <u>2. 제44조의11제3항의 보고서 작성·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u> <u>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u> <u>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u>

현행	개정안
	<u>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u> <u>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u> <u>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u> <u>3.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u> <u>4.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 규모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u> <u>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u> <u>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u>

현행	개정안
	7. <u>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u>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현행	개정안
	<u>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 ⑨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u>

다. 검토사항

-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정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익을 획득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일명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 등 관련

이용자를 제재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비방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한 유튜버는 관련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 유명인의 사건사고 또는 의혹 관련 영상을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던 일부 유튜버들이 유명인의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유명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음.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정보 및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1) 권리침해정보

- (제44조)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¹⁾.
- (제44조의2) 권리침해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1)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삭제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임시조치²⁾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함³⁾.

- (제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통되는 정보가 권리 침해정보로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⁴⁾.

(2) 불법정보

- (제44조의7) 음란정보,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정보(“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불법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⁵⁾.

2)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3)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무에 더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서비스 오용에 대한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약관 내용에 따른 처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침해정보 및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서비스 오용 관련 사항 약관 명시 및 보고서 작성·제출의무

- 첫째,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서비스 오용’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개정안은 ‘권리침해정보 및 불법정보를 게재하는 등’을 서비스 오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그 외에 서비스 오용으로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어떠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지 불분명해 보임.

- 따라서 사업자 및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 오용’을 별도로 정의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약관 내용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약관 변경 권고,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 제정 등의 조치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갖는 약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도, 사업자가 마련한 약관의 내용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한 조치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 이에 따라 사업자별로 서비스 오용의 판단기준 및 이에 대한 제재의 정도가 상이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조치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약관 내용이 과도하거나 미흡한 경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이용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약관에 관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해당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

-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함.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에 대한 신고·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은 의무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 그런데 약관 명시 의무 및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의 취지 및 타 위반행위와의 형평 측면에서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약관 명시 의무 및 보고서

6)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7)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출의무 위반이 정보통신망법상 유일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

-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은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목적인데,

약관 명시 의무 및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업자가 획득하는 부당한 이익이 정보통신망법상 다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의 부당이득과 비교할 때 그 규모나 환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⁸⁾.

8)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불법촬영물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서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에 해당하므로¹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은 개정안에 따른 서비스 오용에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유통방지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개정안에 따른 보고서와 내용이 유사함.

○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사 위반행위 간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입법례들과 달리

9)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상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¹¹⁾.

□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나 후원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게재하는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권리침해정보 및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수용 입장임.

- 또한,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져가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실효성

11)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 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과징금 조항을 신설,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임.

- 다만, 실제 입법이 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상 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과징금, 벌금,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① ‘서비스 오용’의 의미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오용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③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른 제재조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①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가 권리침해 정보 및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번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②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와 달리 개정안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무 이행이 곤란하며,

③ 개정안에 규정된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